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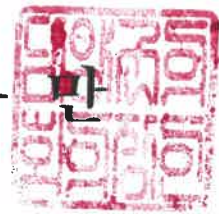
담양군의회 규칙 제12호

공 포 문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일

담양군의회 의장 최 용 만



붙임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 개정 (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

나. 의안 제출·발의 사항의 명확화(안 제19조)

다. 띄어쓰기, 맞춤법 적용 및 용어순화 등

3.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담양군의회 규칙 제12호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권익 신장”을 “권익신장”으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변경 할때또한”을 “변경할 때 또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제2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

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

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을때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때에는의 회운영위원회”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아니할때”를 “아니할 때”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안건에대하여는제안자”를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대하여는의결”을 “대하여는 의결”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그안건”을 “그 안건”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회의록이배부된”을 “회의록이 배부된”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회의록의 배부및 공개)”를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배부 및공개되는”을 “배부 및 공개되는”으로 한다.

제51조 중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54조 중 “위원아닌”을 “위원 아닌”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제시하여다른”을 “제시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심사하기위하여”를 “심사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고사 항을기재한”을 “참고사항을 기재한”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하며,군수”를 “하며, 군수”로, “충실을위하여”를 “충실을 위하여”로, “위원장에게사전”을 “위원장에게 사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의장 에게제출”을 “의장에게 제출”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정하여답변서”를 “정하여 답변서”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수를정하여”를 “수를 정하여”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술기운이 있는사람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7조”를 “법 제99조”로 한다.

제83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차기의회집회일”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u> <u>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u> ----- ----- ----- ----- -----.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u>의장이</u>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 -- <u>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u>권익 신장</u> 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조(선서) ----- -----, ----- <u>권익신장</u> ----- ----- ----- ----- -----
제13조(개회) 본회의는 본회의의 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u>변경 할때또한</u> 같다.	제13조(개회) ----- ----- ---. --- <u>변경할 때 또한</u>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생략)

<신 설>

<신 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72조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제2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의안은 따로이 법령이나 조례등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생략)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을때

<삭 제>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 안

-----.

제25조(안건심의) ① -----

-----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 ③ (생략)

<신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③ (생략)

자-----

-- 대하여는 의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

----- 그 안건-----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 회의록이 배부된-----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생략)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

④ -----

----- 배부 및 공개되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동의자의 -----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 위원 아닌 -----
-----.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시하여 다른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청회) ① -----

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 심사하기 위하여 -----

② -----

----- 참고사항을 기재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 -----

며, 군수 -----

----- 충실을 위하여 -----

----- 위원장 -----

에게 사전 -----

제69조(사직) ① -----

----- 의장에게 제출 -----

야 한다.

②·③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
구서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
원회 (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
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
하여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78조(방청권의 교부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 과장이 그 수를정하여 이
를 교부한다.

② ~ ④ (생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
대한 자

2. 주기가 있는자

3. 정신이 이상이 있는자

4. (생략)

②·③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
조-----

----- 정
하여 답변서-----.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방청권의 교부및 기재) ①

----- 수를 정하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

1. -----
-- 사람

2. 술기운이 있는사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
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
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
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
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
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제83조(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생략)

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
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
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
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

----- 법 제98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99
조-----

④·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우에는 차기 의회

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의 집회일-----
-----.